

의안번호	제176호
의결연월일	2019. 12. 4.

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1월 15일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15일
- 다. 상정일자 : 2019년 12월 4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#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 : 공공시설사업소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정리 및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반환기준 및 사용료를 완화하여 시민의 체육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“공설 운동장” 용어를 “시민 운동장” 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문 수정(안 제1조~제2조)
- 용어정비에 따른 별지 용어정비 [별지 제1호서식~별지 제5호서식]
-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문수정(안 제11조제1항, 제2항 )

-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반환기준 완화 (안 제11조제1항제1호)
-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운동장 전용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정비(별표 1. ~ 별표 2.)
- 환불요청에 대한 규정 조문 및 별지추가 (안 제11조제3항) [별지 제6호서식]

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**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 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